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

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신영대·전재수·윤준병

홍기원 • 이훈기 • 황명선

박희승 · 신정훈 · 노종면

김윤덕 • 이원택 • 한병도
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,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.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.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.

한편,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,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,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%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.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, 자녀세액

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자 하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). 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50만원"을 "150만원(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300만원)"으로 한다.

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"15만원"을 "3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35만원"을 "7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35만원"을 "70만원"으로, "30만원"을 "1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30만원"을 "1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50만원"을 "2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7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1항 및 제59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 | 제50조(기본공제) ① |
| 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 | |
| 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|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| |
| 수에 1명당 연 <u>150만원</u> 을 곱하 | <u>150</u> 만원(제3호나 |
| 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| 목의 경우에는 300만원) |
|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| |
| 에서 공제한다. | |
|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(현행과 같음) |
| ②·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|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대상자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대상자 녀"라 한다) 및 손자녀로서 8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대상자 녀"라 한다) 및 손자녀로서 8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대상자 녀"라 한다) 및 손자녀로서 8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 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대상자 녀"라 한다) 및 손자녀로서 8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|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|

| 3. 3명 이상인 경우: 연 <u>35만원</u> | 3 <u>70</u> 만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| |
| <u>30만원</u> 을 합한 금액 | <u>100만원</u>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 | 3 |
| 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| |
| 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 | |
| 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 | |
| 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| |
| 1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| 1 |
| 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: | |
| 연 <u>30만원</u> | <u>100</u> 만원 |
| 2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| 2 |
| 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: | |
| 연 <u>50만원</u> | <u>200</u> 만원 |
| 3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| 3 |
| 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 | |

-----<u>300만원</u>

④ (현행과 같음)

우: 연 <u>70만원</u>

④ (생 략)